2026년 10월 조세

곡식이 풍성하게 익어 추수하는 계절 10월입니다. 아름다운 10월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대표님과 담당님께 10월 조세 뉴스를 전합니다.

< 김경순 세무사와 직원 일동 올림>

1. 10월의 세무일지

12일 (월)	○ 9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(지연발급 시 1%, 미발행 시 2%의 가산세 부과) ○ 9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(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, 소법 §127~128, 법법 §73) ○ 9월분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산재보험료 납부 ○ 9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〔(월 급여 - 공제액) × 0.5%〕 신고·납부 ▶ 면세점: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▶ 공제액: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제액(지방법 §84-5, 지방령 §84-2 ②)
15일 (목)	○ 고용보험·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
26일 (월)	○ 2026년 9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·납부 ○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·납부
11월 2일 (월)	○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분납기한 ○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신고·납부 ○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 (다음달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법 §70) ○ 8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○ 8월분 양도소득세(기타자산해당 주식 포함), 7월분 증여세, 4월분 상속세 신고·납부 ○ 9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(소법 §164, §164-3) ○ 9월 사업소득자(3.3%)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의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○ 7월 중 이민 등 국외전출★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 간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(소법 §118-15 ②) ○ 전월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★★(대리운전,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)

★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주주가 대상이며 실제 양도시 정산함.

★★자료제출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500원씩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(조특령 §104-29)

2.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

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사업자

① 개인사업자와	2026.1.1. ~ 2026.6.30.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%를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부. 다만,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.
② 법인 중 2026.1.1.~2026.6.30.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	

(2) 직접 10월 26일까지 신고·납부하는 사업자

① 위 (1)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(7월 ~ 9월)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
②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(영세율, 고정자산 투자)

3. 세법 개정(안)

① '28.1.1. 이후 개인 비사업용토지(나대지 등)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확대

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(현재 최대 30% 적용).

㉡ 뿐만 아니라,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더 상향 됩니다.

현행 일반세율 + 10%p 중과에서 → 일반세율 + 20%p입니다(소법 §95 ④ 신설).

② '27.1.1. 이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공시가격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.

종부세과세표준 = (주택공시가격 - ㉠ 공제금액*) x ㉡ 공정시장가액비율**
종부세 = 종부세과세표준 x ㉢ 세율***

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* 개정

거주용	기본공제금액 완화 12억원 → 14억원
비거주용	기본공제금액 현행 유지 12억원 → 12억원

㉠-2.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위 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*

거주용	부부 각각 9억원씩 공제. 총 18억원임 → 개정안 없음. 현행과 동일
비거주용	부부 각각 9억원씩 공제. 총 18억원임 →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총 12억원

㉠-3.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공제금액* : ❶ + ❷. 9억 원 한도

❶ 기본공제금액 : 4억 원, ❷ 5억 원 × $\frac{\text{거주용 주택가액}}{\text{주택가액 합계액}}$

사례 A, B 2주택자 A 공시가격 3억원, B 공시가격 7억원인 경우

A 임대, B 거주	4억원 + (5억원 x 7억원 ÷ 10억원) = 7.5억원 공제
A 임대, B 임대	4억원 + (5억원 x 0원 ÷ 10억원) = 4억원 공제

㉡ 공정시장가액비율** 은 현행 60%에서 → 2027년도 70% 2028년도 80% 인상

㉢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*** 인상(3주택 이상과 과세표준 50억초과 구간 생략함)

과세표준 6~12억원 구간	주택수 무관하게	현행 1.0%	2027년도 1.3%	2028년도 1.3%
과세표준 12~25억원 구간	2주택 이하자 기준	현행 1.3%	2027년도 1.5%	2028년도 2.0%
과세표준 25~50억원 구간	2주택 이하자 기준	현행 1.5%	2027년도 2.0%	2028년도 3.0%

③ 주택 양도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축소로 양도소득세부담 확대

현행	현행 양도차익에서 공제	2028년도	2029년도
1세대 1주택	보유기간 4%씩 최대 40%	보유기간 2%씩 최대 20%	0
	거주기간 4%씩 최대 40%	거주기간 6%씩 최대 60%	거주기간 8%씩 최대 80%
다주택자 (중과제외주택)	보유기간 2%씩 최대 30%	보유기간 1%씩 최대 15% 혹은 거주시간 2%씩 최대 30%	거주시간 2%씩 최대 30%
공제한도	없음	20억원	10억원

④ '27.1.1. 부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& 10년 이상 거주 &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, 양도소득세 축소

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현행 250만원에서 → 2,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5,000만원 입니다. 즉, 이 조건에 맞는다면 20271.1. 이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⑤ '27.1.1.부터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3%에서 2%로 인하 (소법 §104 ①)

4. 근로자 퇴직금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기준인지 여부

1) 퇴직금 계산방법(근로기준법 §2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§8)

근로자의 최저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. "평균임금"이란 퇴직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. **문제는 통상임금의 근로일수가 산술적으로 적게 계산되어 고정급 근로자의 경우, 통상임금이 무조건 높습니다.**

<사례:주 40시간씩 3년간 근로자 퇴직금. 2026.9.16.세무사신문, 신현범세무사 사례 인용>

2026.8.31. 퇴사자	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(3개월 평균 임금)		통상임금에 의한 퇴직금 (주 40시간인 경우 월 209시간*)	
2026.06월 급여	30일	3,135,000	30일	3,135,000
2026 07월 급여	31일	3,135,000	31일	3,135,000
2026 08월 급여	31일	3,135,000	31일	3,135,000
총 계	92일	9,405,000	92일	9,405,000
1일 임금	9,405,000 ÷ 92일	102,228	3,135,000 ÷ 26.125일	120,000
1일 퇴직금	30/365	8,402	26.125일*	9,863
근무기간 퇴직금	1,096일	9,208,946		10,809,863

▶ 월 209시간과 월 근무일수 : 1일 8시간 근무 시 x 주 5일 = 주 40시간 x (365일÷7일=52.142주) = 연 2,085시간 → 2,085시간 + (주휴시간 52.125주 x 8시간 = 417시간) = 주휴포함 연근로시간 2,502시간 월 근로시간 209시간 = 2502시간÷12개월 / 통상근무일수 26.125일 = 209시간 ÷ 8시간

2) 법률해석과 판례차이에 따른 실무적용

① 고용노동부는 10,809,863원**이라는 법 자구에 의한** 해석이고, 항소심은 "단순히 산술적 비교로 통상임금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며 9,208,946원"**으로 판결**했습니다(근로기준정책과 579,2023.2.22.대구지방법원 2024나 318050, 2025.8.21).

② 범용회계프로그램은 9,208,946원으로 산출되며, 판례에 의할 경우 이대로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.

♣ 10월을 건강하게 보내시고, 11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♣